
2021년 [사]전라남도교통연수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전라남도

훈계·통보

제 목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신규 직원채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훈계 대상자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팀장 A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해 연수원 홈페이지 등 4곳에 2020.9.1. 채용 공고문을 게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2020.10.19. 최종합격자로 B를 채용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연수원의 「인사관리규정」 제7조 등에 따르면 직원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고,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무와 일정한 경력을 요하는 직무에 채용되는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기 해당 직급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4조에 따르면 위원장, 이사, 당연직(원장, 도청) 각 1인, 사무부장 총 5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 1차 직원채용 계획안' 심의를 위해 2020. 8. 25(화) 11: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내용¹⁾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연수원은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2020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신규 직원 채용 공고'안을 작성하고 2020.9.1.(화)에 연수원 홈페이지와 전남도 홈페이지 등 4곳에 채용 공고를 하면서 공고기간은 2020.9.1.부터 9.21까지, 입사지원서 접수는 2020.9.22.부터 9.25.까지, 응시자 자격기준은 [표] '전남교통연수원 신규 채용 응시자 자격기준'과 같이 공고하였다.

1) 채용인원은 1명(9급), 공고 기간 20일 이상,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하고 서류심사는 내부위원 5인이 면접심사는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 참석으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하고, 서류심사 일정(10.6.), 면접심사 일정(10.13.)을 정함

[표] 전남교통연수원 신규채용 응시자 자격기준

구 분	채 용 요 건
기본요건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전남교통연수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채용배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채용확정 후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한 자 5. 전남지역에 공고일 이전부터 12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공통사항	성별 : 제한없음
자격요건	1. 전산(컴퓨터) 관련학과 전공한 자 (ex : 전산정보학과, 전산응용학과, 정보처리학과, 전산개발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콘텐츠학과, 정보보안학과 등)
필수자격	1. 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이상)소지자

따라서 연수원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응시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적합한 자로 채용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연수원은 응시자 자격요건을 '전산(컴퓨터) 관련학과 전공한 자'로 공고하여 총 접수인원 10명 중 5명은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니어서 서류심사에서 제외하고 C 등 5명은 서류심사 합격 처리하였으나, 이 중 졸업자가 아닌 졸업예정자(2021.2.18.)를 포함하였고,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자인 B를 2020.10.19.자로 채용하였다.

한편 전라남도는 직원 채용에 있어 졸업예정자를 포함할 경우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공한 자'로 함은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졸업예정자를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채용 공고 시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해석의 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연수원은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직원을 채용하여 적합한 신청자가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고, 인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은

- ① 직원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팀장 A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직원 채용 시 채용공고문 작성 등 관련 업무를 명확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공용 시설장비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훈계 대상자 전라남도교통연수원 ○○부장 A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숙박이 가능한 생활관을 제공하고 실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 교육 추진을 위해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2.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생활관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연수원 「정관」 제5조 등에 따르면 본 연수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과 제규칙을 제정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을 이용하는 업체나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연수원 제규정인 「시설물사용료징수규정」 제3조에 따르면 연수원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 3일 이전까지 원장에게 작성 제출 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²⁾를 당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연수원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용신청서를 제출 받고 원장의 승인 결과를 통보하고 당일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했다.

2) 사용료 기준 : 생활관/기본시간 : 24시간, 기본료 : 30,000원(2인 1실 기준), 1인 추가 시 5,000원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연수원은 소속 직원인 A ○○부장이 생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장에게 구두 승인만 받고 사용료 납부도 없이 2020. 1월 중순경부터 2021. 3. 12. 감사일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총 5일³⁾(1.14., 1.28., 2.4., 2.18., 2.25.)을 사용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연수생을 위한 공용시설물이 직원 사적으로 사용되고 난방비 등 공과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정에 따르면 연수원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연수원은 관용차량에 부착된 공용하이패스카드를 공무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사적인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관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연수원은 2019. 3. 13. ~ 2020. 12. 2.까지 [별표] “2019.~2020.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과 같이 관용차량 ○○○○호에 부착된 공용하이패스카드를 18회에 걸쳐 사용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73,800원을 연수원 예산으로 충전된 공용하이패스카드에서 지불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연수원에 74,800원 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은

- ① 생활관 사용 관리를 소홀히 한 ○○부장 A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앞으로 직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생활관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시설물 사용료징수규정」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5일간 생활관 사용료와 사적으로 사용한 공용 하이패스 사용료 73,8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매주 목요일 중 1.21. 연가, 3. 4. 개인 사정에 따른 귀가로 미사용

[별표] 2019. ~ 2020. 공용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

지출연월일	사용내역			집행액 (원)
	거래시간	입 구	출 구	
계		18건		74,800
2019. 3. 13.	11:08	서광주영업소	동광산영업소	1,200
2019. 4. 10.	13:59		소태영업소	1,200
2019. 5. 1.	17:10		송암영업소	1,200
2019. 6. 14.	18:17		유덕영업소	1,200
2019. 6. 21.	10:55	서순천영업소	남고창영업소	5,400
2019. 7. 11.	20:21		유덕영업소	1,200
2019. 9. 17.	10:25	남순천영업소	강진영업소	4,600
2019. 9. 17.	19:06	강진영업소	남순천영업소	4,600
2019. 11. 1.	08:47	남순천영업소	강진영업소	4,600
2019. 12. 12.	09:19	남순천영업소	강진영업소	4,600
2020. 1. 10.	09:01	남순천영업소	강진영업소	4,600
2020. 4. 16.	09:40	남순천영업소	강진영업소	4,600
2020. 5. 29.	16:04	송광사영업소	서순천영업소	1,900
2020. 6. 25.	15:13	목포영업소	군자영업소	15,500
2020. 9. 24.	09:06	남순천영업소	강진영업소	4,600
2020. 11. 2.	09:15	남순천영업소	강진영업소	4,600
2020. 11. 17.	14:16	남순천영업소	강진영업소	4,600
2020.12. 2.	09:32	남순천영업소	강진영업소	4,600

※ 자료: 전남교통연수원 제출자료 재구성

전라남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전라남도교통연수원 법인 신용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사단법인 전라남도교통연수원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이하 “교통연수원” 이라 한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 있다.

2. 적립 포인트 세입 미조치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연수원의 모든 회계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연수원 회계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전라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구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2020. 5. 14. 제명이 개정되었음)」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회계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¹⁾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수원은 광주은행으로부터 2012. 6. 30. 발급받아 사용 중인 법인 신용카드의 적립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했고,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했다.

1) <http://www.jtei.or.kr>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연수원은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법인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지 않았으며 적립 포인트 429,649원은 그대로 방치하고, [표 1] '2018 ~ 2020년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와 같이 18건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표 1] 2018 ~ 2020년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명세

지출연월일	예산과목	집행 내역	집행액(원)
계		18건	18,396,310
2018. 2. 2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임원 설명절 선물 구입비	1,100,000
2018. 2. 2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의회 및 교육협력자 설명절 선물비	918,000
2018. 2. 2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 설명절 선물 구입비	700,000
2018. 9. 1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운영 및 교육협력자 추석 선물비	1,297,100
2018. 9. 2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 추석 명절 선물비	700,000
2018. 10. 1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임원 추석 명절 선물비	1,100,000
2018. 11.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출자출연기관장 간담회비	620,000
2018. 11. 2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합 및 협회 초청간담회 행사비	554,880
2019. 2. 1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육협력자 설명절 선물비	1,947,800
2019. 3. 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수원장 취임식 행사비	763,530
2019. 3. 1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수원 임원 및 대의원 설명절 선물비	1,100,000
2019. 9.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 및 교육 협력자 추석 선물	525,000
2019. 9. 1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 및 교육협력자 추석 선물	1,400,000
2019. 10.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육협력자 추석 선물	1,350,000
2020. 1. 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 및 교육협력자 설명절 선물	1,300,000
2020. 3. 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교통연수원 임원 및 대의원 설명절 선물	1,300,000
2020. 9. 2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교육협력자 추석명절 선물	570,000
2020. 10. 1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교통연수원 임원 및 대의원 추석명절 선물	1,150,000

※ 자료: 전남교통연수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법인 세입 처리되지 않은 적립 포인트는 기한에 따라 소멸 예정이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에서 축의·부의금품의 집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수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축의·부의금품 비용을 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하는 등 건전하게 사용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연수원은 [표 2] '2019 ~ 2020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같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 등에게 집행하는 등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

[표 2] 2019 ~ 2020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출연월일	예산과목	집행내역	집행액(원)
계		2건	100,000
219. 12. 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뉴스스 ○○○기자 출판기념회 축하성금	50,000
2020. 1. 13.	"	월간전남 참관식 행사 찬조금	50,000

※ 전남교통연수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연수원은 기관 운영 및 정책 추진을 위해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 편성 목적에도 맞지 않게 집행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은

- ① 연수원은 세입조치 되지 않은 카드사용 적립 포인트 429,649원은 세입조치 하고, 업무 유관기관이 아닌 자에게 집행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천 원은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인 신용카드 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개선·시정 요구

제 목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회계규정 개정 및 정비 부적정

관 계 기 관 사단법인 전라남도교통연수원

내 용

1. 업무개요

사단법인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이하 "교통연수원"이라 한다.)은 연수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회계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회계 관직 경직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연수원의 모든 회계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연수원 회계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전라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구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2020. 5. 14. 제명이 개정되었음)」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회계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지방회계법」 제6조에 따르면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관과 지출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수원은 세출 총괄 담당관인 재무관은 원장으로 하고, 지출담당인 지출원은 총무팀장으로 직무를 분리해 운용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연수원은 재무관과 지출원은 회계관리의 엄정성과 직무상 비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원장이 재무관과 지출원을 모두 경직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법령의 취지와 반하는 재무관과 지출원의 경직으로 직무상의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경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3.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르면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은 업무를 집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재정보증 보험 가입을 이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연수원에서 2020. 7. 25.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된 A ○○계장은 감사일 현재까지 재정보증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2020. 7. 25. 퇴사한 B 대리에 대한 재정보증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회계 담당자에게 변상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회계담당자의 예견치 않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연수원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은

- ① 연수원은 재무관과 지출원이 경직 되지 않도록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회계규정」을 개정 조치하여 주시고,(개선)
- ②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보험 가입은 직원이 아닌 직위로 가입하여 주시고, 퇴직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해지와 가입된 보험금액을 환수토록 조치하여 주시며
- ③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회계규정 개정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